# 재해보상요령

제정 2003. 10. 23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, 안전사고로 인한 외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직원"이라 함은 기정원의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.
- 2. "업무상 재해"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임직원의 부상, 질병,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.
- 3. "순직"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.
- 4. "산재보상"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"산 재보험법"이라 한다)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"산재보험"이라 한다)을 관장하는 기관(이하 "보험관장기관"이라 한다)에서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.
- 5. "자체보상"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 또는 그 보 상범위를 초과하는 차액부분에 대하여 기정원이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.
- 6. "부득이한 사고"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고를 말한다.
- 7. "합의배상"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.
- 8. "안전사고"라 함은 임직원, 기정원 장비, 물자 및 설비 등에 의하여 발생 한 외부인에 대한 인적·물적 피해사고를 말한다.
- 제3조(보상)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제2장에 정하는 산재보험 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장에서 정하는 자체보상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보상 및 배상 주관)** 제2장의 산재보상 등, 제3장의 자체보상, 및 제5장 의 배상은 기획관리본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.

#### 제2장 산재보상 등

- 제5조(보험의 가입) 기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6조(보상의 종류 및 범위) 산재보상의 종류·적용범위 및 기타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**제7조(보험료 납부)**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보상금 청구) ①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장기관에 동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산재보상중 휴업보상은 매월 1회 기정원에서 급여지급일에 선불하고 보험관장기관에서 수급하여 정산한다.
  - ③제2항에 의한 선불을 행할 때에는 수급권을 위임받아야 한다.

## 제3장 자체보상

- **제9조(자체보상의 인정 및 신청)** ①자체보상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는 기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- ②자체보상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 관부서의 장에게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사고경위서(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)
  - 2. 목격자 진술서(목격자가 있는 경우)
  - 3.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

- 4. 재산상 손해내역서(재산상 손해의 경우)
- 5. 소속부서장 의견서
- 6.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
-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보상 인정여부를 신청접수일로부터 30근무일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*제10조(자체보상의 종류 및 기준)** ①자체보상이 결정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 보상을 실시한다.
  - 1. 요양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.
  - 2.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  - 3. 장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완치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 법의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실시한다.
  - 4. 일시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부 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시보상에 해 당하는 보상을 하고 기정원은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.
  - 5. 유족보상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.
  - 6. 정신적 ·물적 피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 보상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.
- 제11조(다른 보상과의 관계)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, 산재보험법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정원은 보상받은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.

#### 제4장 기정원장

- **제12조(기정원장)** 순직 또는 기정원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정원장을 행할 수 있다.
- 제13조(장의신청)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정원장은 재해내용, 신청사유, 공적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장의절차) ①장의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제1항의 장의절차는 유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장의비용) 기정원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장의비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용후 잔액이 있을 시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여 동 범위를 초과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 5 장 배 상

- **제16조(배상책임)**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은 기정원측에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- 제17조(보고 및 처리)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관련부서장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를 경유, 원장에게 보고하고 배상을 위한 교섭을 하되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안전사고인 경우는 합의배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8조(합의배상)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배상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사고 발생경위
  - 2. 기정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및 과실비율
  - 3. 피해자의 손해내용 및 손해액(과실상계 공제후)

- 4. 합의 상대방 및 합의배상금
- 5.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
- 6.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증자료
- ②합의배상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갖추어야 한다.
- 1. 관련사고
- 2. 합의당사자
- 3. 합의배상금
- 4. 일체의 민 · 형사상 청구권의 포기
- 제19조(배상기준) ①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합의배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판례상 인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한다.
- 제20조(부상자의 치료) 기정원측에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치료는 기정원이 인정하는 의료시설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1조(치료비 지급) 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기정원에서 부담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비는 매월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제22조(입원치료)**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하지 아니한다.
- 제23조(일시배상) 부상자가 이 요령에 따른 치료를 개시한 후 3개월경과시까지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치료비, 장해보상금, 휴업보상금 및 위자료 등 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정원은 책임을 면한다.
- 제24조(구상) 임직원에게 과실이 있음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 및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 조치할수 있다.

#### 제6장 보상 및 배상심의회

- 제25조(구성) ①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 및 배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제1항의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1. 위원장 : 원장
  - 2. 위원 :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실·부장
  - 4. 간사 : 주관부서의 담당팀장
- 제26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자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
  - 2.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
  - 3. 배상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
  - 4.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여부
  -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2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  -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8조(의견진술)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29조(성립 및 의결)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  - ②배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.
  - ③구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수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적은 금액

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.

- 제30조(확정) ①위원회에서 보상 및 배상이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.
  - ②심의회의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원장은 당해사안을 재심의 하게 할 수 있다.
- 제31조(법률고문의 자문) 위원장은 배상심의에 앞서 법적 배상여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### 부 칙(2003. 10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1]

# 배 상 사 고 발 생 보 고

사고발생	일시			장소			
피해자	성명	성별		생년월일		직업	
	가족관계		월긴	<u></u>			
피해정도							
사고내용							
사고에대한 기술적견해							
사고에대한 법률적견해							
피해자측 배상요구액							
배상협의 전망 및 대책							